#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798 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박지혜・이재강・이건태

이소영 · 이용우 · 정성호

위성곤 · 김성환 · 허 영

오세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등에도 불구하고,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·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위와 같이 공장을 신·증설할 경우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는 필수적 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, 공업지역 별도 배정에 관한 규정이 제 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제한됨.

한편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예외적으로 특별시·광역시·도별 기존 공업지 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,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.

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%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"로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또는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5조(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제15조(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 (생 략)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 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 여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 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 역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하 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 할하는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의 공업지역을 별도로 배정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 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

거나 이의 허가·승인 또는 협	
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	
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	
지 아니한다.	<u>.</u>